

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	
사업명						
시행자						
위치		사업시행면적 m ²				
사업비		시행계획승인일				
착공일		준공예정일		준공일		
토지이용계획 (m ²)	용도별					
	면적				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
	개요					
일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
	개요					

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[시·도지사] 귀하

첨부서류	1. 준공조서(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) 2.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.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. 삭제 <2017. 12. 29.> 5.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.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. 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. 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. 신·구 지적대조도 10.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(관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(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